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 4. 20.

행정위원회

1. 審 査 經 過

가. 제출일자 : 2010년 3월 12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4월 14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0. 4. 15) 상정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 案 說 明 者 : 재정경제국장 안 동 수)

가. 제안이유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합되는 등 지방세의 세목체계가 개편되었음.

나. 주요골자

-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삭제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함 (안 제3조)
-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의 사업소세 재산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의 사업소세 종업원할과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專門委員 이 현 영)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세목체계를 일부 개편하는 것이며,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사항도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바, 시행하여도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審査結課 : 原案可決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263호 |
|----------|-------|

제출연월일 : 2010.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일부 개편됨.

2. 주요내용

- 가. 구세 세목에서 사업소세를 폐지하되,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함.(안 제3조)
- 나. 주민세 재산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 사업소세 재산할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다.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세율, 신고의무를 종전 사업소세 종업원할의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2010년 1월 1일 공포·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필요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조표 : 별첨

(2) 입법예고(2010. 1.28 ~ 2.17)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사무 없음

첨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

1. 면허세
2. 재산세
3. 주민세 재산분
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2장에 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4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주민세 재산분

제2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
한 시기
5. 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제2항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
로 한다.

제30조(신고의무)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
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
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제3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

제32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제33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

제3장(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3조(세목) ①구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p> <p>②보통세는 다음과 같다.</p> <p>1. 면허세</p> <p>2. 재산세</p> <p>③목적세는 다음과 같다.</p> <p>1. 사업소세</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2장 보통세</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신 설></p> | <p>제3조(세목) 구세는 다음 각 호의 보통세로 한다.</p> <p>1. 면허세</p> <p>2. 재산세</p> <p>3. 주민세 재산분</p> <p>4. 지방소득세 종업원분</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제2장 보통세</p> <p>제3절 주민세 재산분</p> <p>제28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과세기분 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p>1. 사업주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p> <p>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p> <p>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p> |

| 현행 | 개정안 |
|----|--|
| | <p><u>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4. <u>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u></p> <p>5. <u>비과세 사유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u></p> <p><u><신설> 제29조(세율) ① 법 제176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u></p> <p><u>② 폐수 또는 산업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영 제130조의9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u></p> <p><u><신설> 제30조(신고의무)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u></p> |

| 현행 | 개정안 |
|---------------------------------------|---|
| | <p>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세조례」 제20</p> |
| <p><신 살></p> <p><신 살></p> | <p>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p>제4절 지방소득세 종업원분</p> <p>제31조(비과세 또는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령 또는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비과세 또는 감면 받으려는 자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8조에 준하는 관계증빙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p> |

| 현행 | 개정안 |
|---|---|
| | <p>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 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다.</p> |
| <p><신 설></p> | <p>제32조(세율) 법 제179조의7제2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p> |
| <p><신 설></p> | <p>제33조(신고의무) ①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그 밖의 신고사항은 제30조를 준용한다.</p> |
| <p>제3장 목적세</p> | <p><삭 제></p> |
| <p>제1절 사업소세</p> | <p><삭 제></p> |
| <p>제30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p> <p>1. 재산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p> <p>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분의 0.5</p> <p>②법 제2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p> | <p><삭 제></p> |

| 현행 | 개정안 |
|--|--------------------|
| <p><u>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u></p> <p><u>제32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부 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u></p> | <p><삭 제></p> |
| <p><u>소유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 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u>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u> <u>2. 건축물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u> <u>3. 비과세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 <u>4. 과세대상 건축물이 비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u> <u>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u> <u>6.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u> | |

| 현행 | 개정안 |
|---|--------------------|
| <p>7.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제33조(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납기 개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p> | <p><삭 제></p> |
| <p>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비과세 및 감면사유 6. 기타 필요한 사항 | |